

수원지방법원 2020. 1. 31 선고 2019나558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0. 1. 31 선고 2019나5588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5. 30 선고 2018가단7639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A

피고, 피항소인B

변론 종결 2019. 12. 13.

판결 선고 2020. 1. 3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단763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항소비용(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)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1,710,000원 및 그 중 130,000,000원에 대하여는

2018. 11. 8.부터, 11,710,000원에 대하여는 항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11,71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였다)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'2. 추가판단'에서의 원고 주장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원고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 판단

가. 먼저, 원고는 '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차임 중 합계 8,210,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복 지급한 차임 8,210,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'고 주장하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월차임 중 합계 8,210,000원을 중복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또한, 원고는 '원고가 2017. 1. 3. 피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S호의 임차인 T의 보증금 3,500,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,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'고 주장하나, 설령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가 그 관리인인 원고를 통해 위 다가구주택 S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3,500,000원(원고는 보증금으로 35,000,000원을 지급받고도 피고에게 그 중

3,500,000원만을 지급하였다)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'피고가 위 3,500,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'거나 '그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'고 할 수는 없고,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윤희찬

판사이용희

판사김경인